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5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송옥주 · 이병진 · 한민수
전용기 · 한정애 · 이수진
황명선 · 박해철 · 박 정
김현정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 시설, 어구의 규모·형태 등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형태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채

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2.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포획방법·채취방법(마늘어업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7조(시·도 연안자원관리)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7조(시·도 연안자원관리) ① ----- ----- ----- ----- ----- ----- -----다음 각 호에----- -----.
<신 설>	1.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신 설>	2.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포획방법·채취방법(마을어업에 한정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